

# 『2020 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』 공고문

(재)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육성·발굴을 위하여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.

2020년 3월 26일

(재)안양창조산업진흥원 **장인**



## I 사업개요

1. 사업명 : 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 지원
2. 지원대상 : 안양시 소재 청년창업 기업 10개사 내외
3. 총사업비 : 금100,000,000원(일억원)
4.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0. 11. 7

## II 신청자격

### 1. 신청자격

가.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또는 창업기업(대표자 만39세 이하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)

청년기업	창업기업
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이거나,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율이 50% 이상인 기업	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(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2항)

※청년기업, 창업기업 등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

나.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시작품 제작 희망하는 기업으로 협약기간 내에 해당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기업

다. 제외 대상

- ① 신청 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동일한 내역으로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
- ② 지원내용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
- ③ 국세, 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기업
- ④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및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
- ⑤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 III 지원내용

1.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10,000천원(기업매칭 10%)

2. 지원분야

가. 하드웨어 개발 및 제품 디자인 제작, SMT(SMD), 회로개발, SOC 제작, PCB설계/제작(※단순 장비구입비 제외)

나. 소프트웨어 개발, UI 구축 및 플랫폼 개발, 상용화 가능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앱 개발 등(※단순 기업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제외)

다. 양산 가능성 확인 및 제품 검증과 홍보를 위한 시작품 제작

3. 기업부담금 : 지원금액의 10% 이상 매칭비 및 부가세 자부담 必

▶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출예시

(단위 :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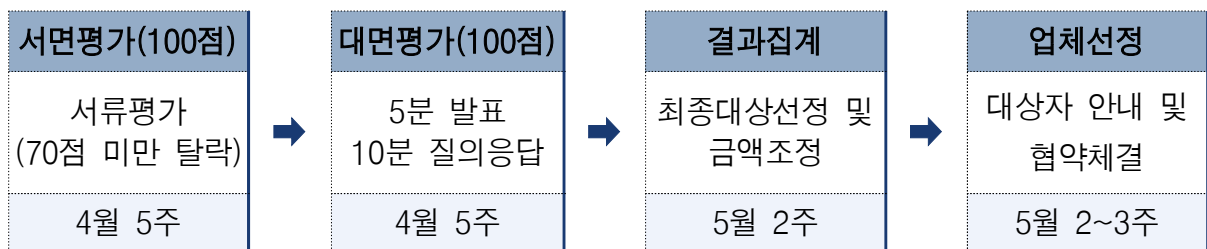
구 분	시작품 제작 소요비용 (부가세 포함)	진흥원 지원금	기업부담금		비고
			매칭비	부가세	
A기업	15,000	10,000	3,500	1,500	
B기업	12,100	10,000	1,000	1,100	
C기업	7,260	6,000	600	660	

※ 매칭비 : 진흥원 지원금액의 10% 이상 자부담(현금만 인정)

## IV 선정절차 및 방법

1. 평가방법 : 서류 및 발표 평가

2. 선정절차 및 일정



3. 위원구성 :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

4. 지원금 조정 : 사업비 심사 후 지원금 확정

※ 지원금이 조정된 경우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

5. 평가기준 :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

구분	방법	기준	총점
서류 평가	•시작품제작계획서 및 관련 증빙 검토 등 -계획서, 기지출 증빙, 지출예정 견적 등	•시작품제작계획의 구체성(20) •제품제작의 적합성(20) •제품화 개발역량/수행능력(20) •시작품 활용기대 및 사업성(40)	100
대면 평가	•개별 인터뷰/시작품제작계획 PT	•시작품 사업성(40) •전문성(20), 기술성(20) •지원자금 대비 예상되는 성과(20)	100
가점 부여	•안양시 우수기업 인증,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(항목당 5점) •벤처기업확인서, 이노비즈인증서, 여성기업확인서,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(항목당 2점) ※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		10

6. 결과발표 :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aca.or.kr) 공지

## V 주의사항

1. 지원분야 동시 지원 불가
2. 집행방법
  - 가. [진흥원] → [청년기업] 계좌이체
  - 나. 지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은 별도로 체결
  - 다. 별도의 시작품제작비 관리 계좌(사업비 전용통장) 개설 및 카드 발급
3. 기업부담
  - 가. 시작품 제작 총 소요비용 중 진흥원 지원금액의 10% 이상은 기업 자부담 必
  - 나. 기업부담금은 현금만 인정되며 현물 불가
  - 다.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인정되며 부가세는 지원기업이 부담
4. 보증방법
  - 가. 협약체결시 매칭비 및 부가세 금액 전용계좌 입금후 이행(지급)보증보험 증권 제출
  - 나.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은 지원금에 대한 보증액으로 제출
  - 다. 협약기간 : 협약일 ~ 2020.11.07.
  - 라. 사업지원금 사용기한 : 협약일 ~ 2020.10.30.
  - 마. 이행(선금급)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 : 협약일 ~ 2020.12.31.
5. 인정범위
  - 가.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용된 금액 ~ 10월 30일까지 사용예정 금액
  - 나. 인건비, 장비구입비 등 시작품 제작 및 제품 고도화 와 관련 없는 제 비용 계상불가
  - 다. 협약기간 동안 진흥원과 사전 협의 된 계약내용만 인정(변경불가)
  - 라. 선정기업이 이미 보유한 재료, 장비, 기술 등에 대한 내부비용 계상 불가
  - 마. 사업계획서 및 신청시 제출한 복수견적(3개사 이상) 검토 후 최종사업비 산정 및 지급  
※ 기타사항은 「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지원」 사업비 운영지침 참조

## 6. 관리방법

- 가. 별도의 사업비 관리 계좌 및 카드로 타 사업의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
- 나.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 외에는 불가
- 다.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 간 거래 불가(사업비 계좌에서 현금인출 불가)
- 라. 매칭비 및 부가세는 협약체결 시 전용계좌로 미리 입금하여 집행금액에 포함
- 마. 전용통장 입출금내역과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는 일치되게 편철 관리

## 7. 정산방법

- 가.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2차에 걸쳐 계좌이체 지급
- 나. 사업지원금 사용기한(2020.10.30)까지 자금을 집행하고, 7일 이내(2020.11.7.)에 사업지원금 정산결과를 진흥원에 제출
- 다. 정산자료에 대한 진흥원의 검토결과 또는 회계감사(자금정산 회계법인 위탁) 결과,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,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비 반납

## VI 신청 관련 문의

1. 사업공고 : 2020. 3. ~ 2020. 4. 23(목) 限
2. 접수기간 : 2020. 4. 16(수) ~ 2020. 4. 23.(목) 17시 限
3. 제출방법 :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후, 원본 1부, 사본 3부 출력하여 방문 제출(병행)  
※ 제출서류에 스탬플러 사용 금지
4. 제 출 처
  - 가. 온라인 :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(<http://www.aca.or.kr>) 시직품제작지원사업 신청
  - 나. 방 문 : 안양창업지원센터(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-41) 2층 청년창업지원부
5. 관련문의 : 청년창업지원부 안소진 책임/ [asj@aca.or.kr](mailto:asj@aca.or.kr)/ 031)8045-6753